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사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59호)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360호)

2021. 6.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장 호

목 차

I . 개요	1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2
II. 검토의견	4
1. 두 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4
2.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절차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 의 징계절차 비교	6
3. 검사 외의 다른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	14
4. 검토의견	21

I. 개요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강욱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2. 26.
- (3) 회 부 일 : 2021. 3. 2.

나.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절차 및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6조제2항 신설).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강욱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2. 26.
- (3) 회 부 일 : 2021. 3.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두 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고자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사 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u>정원, 보수 및 징계</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u>정원 및 보수</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u>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두 법안은 검사에 대하여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청

1) 이하 “안”이라고 지칭함.

구에 의하여만 징계심의를 개시하고²⁾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³⁾보다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따라⁴⁾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욱 공정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두 법안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나타나듯이 검사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던 「검사징계법」⁵⁾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 규정을 적용하려는⁶⁾ 것임.

-
- 2) 검사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 3)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5)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공무원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서도 안 제36조제2항에서는 검사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 검사의 신분상·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상의 징계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관한 징계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절차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절차 비교

현행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검사를 신분보장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일종인⁷⁾ 특정직공무원으로 정하면서 그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① 「검찰청법」 제43조⁸⁾를 위반하였을 때,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8)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③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⁹⁾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를 하게 됨.¹⁰⁾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고,¹¹⁾ 징계심의는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됨.¹²⁾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5명의 외부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검사 징계위원회가 구성됨.¹³⁾

9)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0)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12)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13)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¹⁴⁾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징계심의를 정지하게 됨.¹⁵⁾

징계가 의결되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견책의 경우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게 됨.¹⁶⁾

반면,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①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¹⁷⁾ 파면·해임·강등·정

이어야 한다.

14)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 송달과 직무정지)**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5) **검사징계법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6) **검사징계법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17)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를 하게 됨.¹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속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게 되고,¹⁹⁾ 징계처분의 심의·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됨.²⁰⁾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고, 회의 때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²¹⁾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18)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19)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 사. (생략)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1)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직위해제의 기간 제한은 두지 않고 있음.²²⁾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²³⁾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하다고 인정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⁴⁾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면 파면과 해임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그 밖의 징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게 됨.²⁵⁾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3)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5)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표 2] 「감사징계법」 상 감사의 징계절차와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절차 비교

구 분		「감사징계법」 상 감사의 징계절차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절차
징계 사유		○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감사징계법」 제2조)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징계의 종류		해임·면직·정직(1~6개월)·감봉(1~12개월)·견책 (「감사징계법」 제3조)	파면·해임· 강등 ·정직(1~3개월)·감봉(1~3개월)·견책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제80조)
징계 요구권자		검찰총장 (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 (「감사징계법」 제7조)	소속 장관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소속기관의 장도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
징 계 위 원 회	명칭	감사 징계위원회 (「감사징계법」 제4조제1항)	중앙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
	설치	법무부 (「감사징계법」 제4조제1항)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1항)
	위원 수	9명 (「감사징계법」 제4조제2항) 이 중 민간위원은 5명 (「감사징계법」 제5조제2항)	17명 이상 33명 이하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1항)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민간위원 5명 이상)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5항)
	위원 장	법무부장관 (「감사징계법」 제5조제1항)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
	위원	○ 법무부차관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한국법학교수회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검사징계법」 제5조제2항)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
직무 집행 정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 (「검사징계법」 제8조제3항)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직위해제 기간 제한은 없음(단, 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부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제78조의4제3항)	
징계 절차 중단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검사징계법」 제24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불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징계의 집행권자	○해임·면직·정직·감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견책: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검사징계법」 제23조제1항)	○파면·해임: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 ○그 밖의 징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검사의 징계절차와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비교하면, ① 징계사유가 법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및 체면·위신 손상으로 동일하고,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9명으로 구

성되면서 민간위원은 5명 또는 그 이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③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 집행에서 배제될 수 있고, ④ 파면·해임·면직의 집행권자가 임용권자²⁶⁾라는 점에서는 유사함.

그러나 검사의 경우 ①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검사라는 단일 직급이므로²⁷⁾ 일반적인 국가공무원과 달리 ‘강등’이 없고, ②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는 ‘검찰총장’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 등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상이하며,

③ 검사 징계위원회의 경우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민간위원 중 3명은 외부의 추천을 받는 것과 달리,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게 됨.²⁸⁾

26)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27)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28)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감사의 경우 직무 집행 정지는 ‘2개월’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는 반면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의 기간 제한이 없고, ⑤ 감사에 대한 징계절차의 중단 사유가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로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더 엄격하며, ⑥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이 가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심사 청구”가 감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 등의 다른 측면이 있음.

3. 감사 외의 다른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반면, 특정직공무원의 경우²⁹⁾ 일반적으로 개별 공무원법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속하는 기관의 설치법에 규정된 징계 관련 조항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게 됨.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각 개별 공무원법에서 계급 또는 직급별 관할 징계위원회와 징계 집행권자를 규정하고 있음.³⁰⁾ 특히 일정 계급 또는 직급 이상의 공

2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0) 징계와 관련하여 각 개별 공무원법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됨.
외무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원(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개별법상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징계 관련 규정

외무공무원법

제28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징계의 절차 등)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8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징계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반면, 특정직공무원 중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각 개별 공무원법 또는 조직 설치법에서 징계요구권자, 징계사유, 징계 집행권자 및 그 밖의 징계절차 전반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범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급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표 4] 개별법상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의 징계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군인사법

제10장 징계

제56조(징계 사유)

제56조의2(징계부가금)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8조(징계권자)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제60조(항고)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61조(위임규정)

군무원인사법

제7장 징계

제37조(징계사유)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38조(징계권자)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42조(항고)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조의2(위임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장 징계

제24조(징계 사유)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 절차)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에 대하여는³¹⁾ 「법관징계법」에서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

도로 규정하고 있는데,³²⁾ 대법원에 두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역시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장에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³³⁾ 헌법재판소에 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표 5] 법관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징계위원회 설치·구성 관련 규정

법관징계법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2) 법관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3)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4. 검토의견

두 법안에 따라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검사도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징계절차에 있어 검사와 다른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징계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이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른 최대 6개월인 정직기간과 최대 1년인 감봉기간이³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최대 3개월로 줄어들게 되

어³⁵⁾ 검사에 대한 일부 징계처분의 강도가 완화되는 등 검사와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징계처분의 내용 및 결과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임.

실제로, 특정직공무원 중 일정한 계급 또는 직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둘째, 현행법에 따른 징계제도와 비교할 때 검사의 비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계요구가 가능해질 수 있어 징계요구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³⁶⁾ 징계청구의 여부가 전적으로 검찰총장의 의사

34)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35)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6) 검사징계법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에 따라 결정되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두 법안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소속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소속기관의 장도 검사에 대하여 징계요구가 가능해지므로³⁷⁾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두 법안에 의하면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검사의 소속기관인 검찰청³⁸⁾이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자³⁹⁾ 소속 부처인⁴⁰⁾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라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맡게 됨에 따라 징계처분 결정 과정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두 법안에 대하여는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두 법안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상의 독립성과**

37)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8)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9)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40)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공정성·객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⁴¹⁾ 검사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⁴²⁾ 현행법은 검사에 대하여 법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⁴³⁾

구체적으로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권만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으며,⁴⁴⁾ ②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률에 따라 보장이 되고,⁴⁵⁾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 결정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⁴⁶⁾, ④ 검사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이 되고,⁴⁷⁾ ⑤ 검찰청 조직과 검사의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정하는 법규명령(대통령령 또는 부령)이 아닌 입법부가 정하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⁴⁸⁾⁴⁹⁾

41) 검사가 행하는 수사와 공소는 광의로 보면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는 사법의 기능의 일부이며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행정권에 속하면서도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준보·이완규,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2017, 297면).

42) 이재상·조근석, 형사소송법(제11판), 2018, p. 96.

43) 사법의 영역에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 처우,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법관에 준하도록 규율되고 있음(이준보·이완규, 앞의 책, 297면).

44)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45)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6)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47)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8) **검찰청법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신분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⁵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검사의 신분도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의 근거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취지에서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이 포함되었고⁵¹⁾ 1957년에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⁵²⁾ 현재까지 내용상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검사의 징계절차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규율에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측면이 있음.

즉, 대통령령으로 검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 소속인 인사혁신처장이고 위원 8명도 모두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⁵³⁾ 징계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서 행정부의 영향

49)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0)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1) 검찰청법[법률 제81호, 1949. 12. 20., 제정] 제22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단, 검찰청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52) 군정법령 제166호 검찰관징계령에 대치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징계법[법률 제438호, 1957. 2. 15., 제정] 제정·개정 이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6817&ancYd=19570215&ancNo=00438&efYd=195702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1. 4. 2. 확인).

53)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에 참

력이 현재보다 더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또한,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도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⁵⁴⁾에 따라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바뀌고,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 및 다른 소속기관의 장도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가능해지게 되어 징계요구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음.

그 밖에도 「검사징계법」상 직무 집행 정지기간은 2개월 이내인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기간 제한이 없고, 「검사징계법」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 의결결과가 가볍다고 인정하면 재심사 청구가 허용되는 등 검사의 신분상 더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두 법안이 검사의 독립성 확보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중립성·공정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두 법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검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현행 「검사징계법」의 제도설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고 검사의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검사징계에 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

그러나 두 법안에 따라 「검사징계법」이 폐지되어 검사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⁵⁵⁾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 현행법과 달리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됨.

셋째,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법률·감사·인사 분야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⁵⁶⁾ 징계 심의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의 전문성

5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6)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뿐만 아니라 특정직공무원 중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직종별로 신분상·업무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 심의를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결국, 검사의 직무수행상 독립성·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전문성, 행정부 및 헌법기관 소속 다른 직종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 대하여 현행법상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할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할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검사의 신분상·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검사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⁵⁷⁾에 대해서는 안 제36조제2항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보다는 징계가 검사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57) 가령, 「검사징계법」 제3조와 같이 단일 계급인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강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고려하여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특정직공무원의 징계 규정 입법례와 같이 「검찰청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두 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권한을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므로, 「검사징계법」의 폐지로 인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징계는 본질적으로 인사·복무관리에 해당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⁵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징계 또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⁵⁹⁾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 인사에 관한 「검찰청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인사혁신처는 절차의 공정성 및 직종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두 법안의 취지와 함께 「검사징계법」을 1957년에 별도로 제정한 이유 및 필요성, 특정직공무원인 검사의 인사관리나 업무상 특수성 등을 종합적

58)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59) 검사징계법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건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임.

다만,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더라도 다른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률처럼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징계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검사 인사관계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 둘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면서도,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수사절차·공판절차·재판집행절차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검찰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더불어 신분보장을 선언하고⁶⁰⁾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왔던 것이므로, 그것이 법관의 수준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전부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48

60)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